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45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1. 4.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행환경개선사업등의 추진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행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된 법 조항 정비(안 제5조)

나. 보행환경개선사업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라. 보행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팩스: 055-880-2939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등의 추진)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밖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정비 및 조명시설의 설치
2.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한 가로수, 화단, 조형물 등 노상시설의 정비
3. 보도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
4.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정비 및 보행 동선의 개선

5.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제12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휠체어·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 경계의 턱 낮추기 및 보도와 공공건축물 출입구를 연결하는 경사로 등의 설치·정비

2.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안내표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정비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주변 보행환경의 정비

제13조(보행시설의 점검 및 정비) ① 군수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편의증진시설 및 노상시설(이하 “보행시설”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의2제2항 ----------.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등의 추진)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밖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정비 및 조명시설의 설치 2.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한 가로수, 화단, 조형물 등 노상시설의 정비 3. 보도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 4.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정비 및 보행 동선의 개선 5.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신 설>	제12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휠체어·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 경계의 턱 낮추기 및 보도와 공공건축물 출입구를 연결하는 경사로 등의 설치·정비 2.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안내표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정비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주변 보행환경의 정비

<신 설>	제13조(보행시설의 점검 및 정비) ① 군수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편의증진시설 및 노상시설(이하 “보행시설”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